

인터넷과 기업의 명예훼손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¹⁾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글_ 장성원(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포털뉴스, 언론사닷컴, IPTV 대상 직접 중재위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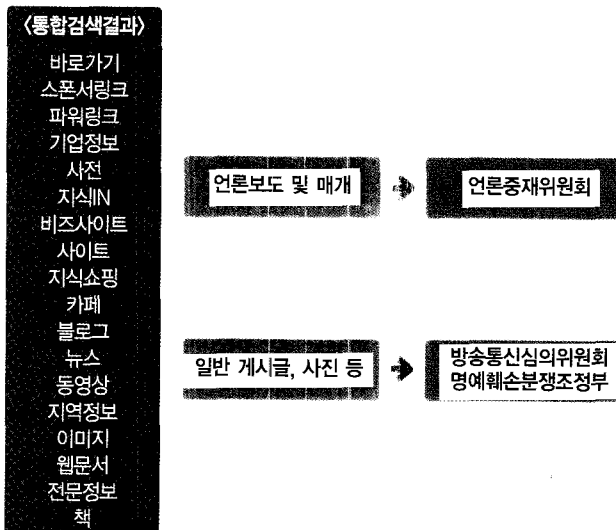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2009년 8월 7일부터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게재되는 각종 언론 보도의 피해자는 포털을 상대로 직접 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원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이 이뤄진 후 합의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기사를 수정·삭제하는 식으로 포털 관련 분쟁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었는데, 이제 바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해서 중재부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대부분 원 언론사의 조치대로 포털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번 법 개정으로 포털뿐만 아니라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등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언론사닷컴)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도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호의 사례처럼 피해를 입은 A사는 원 언론사인 B인터넷신문 및 해당 기사를 매개해서 보도한 포털업체를 상대로 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 언론사가 오프라인 신문이나 방송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닷컴도 신청대상으로 추가하면 될 것이다. A사는 신청 후 포털과 단순 정정기사 게재 외에도 해당 기사 삭제 또는 기사 제목이나 본문의 수정 등으로 합의해서 인터넷에 부정적인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포털 뉴스 및 게시물 처리기관 이원화 문제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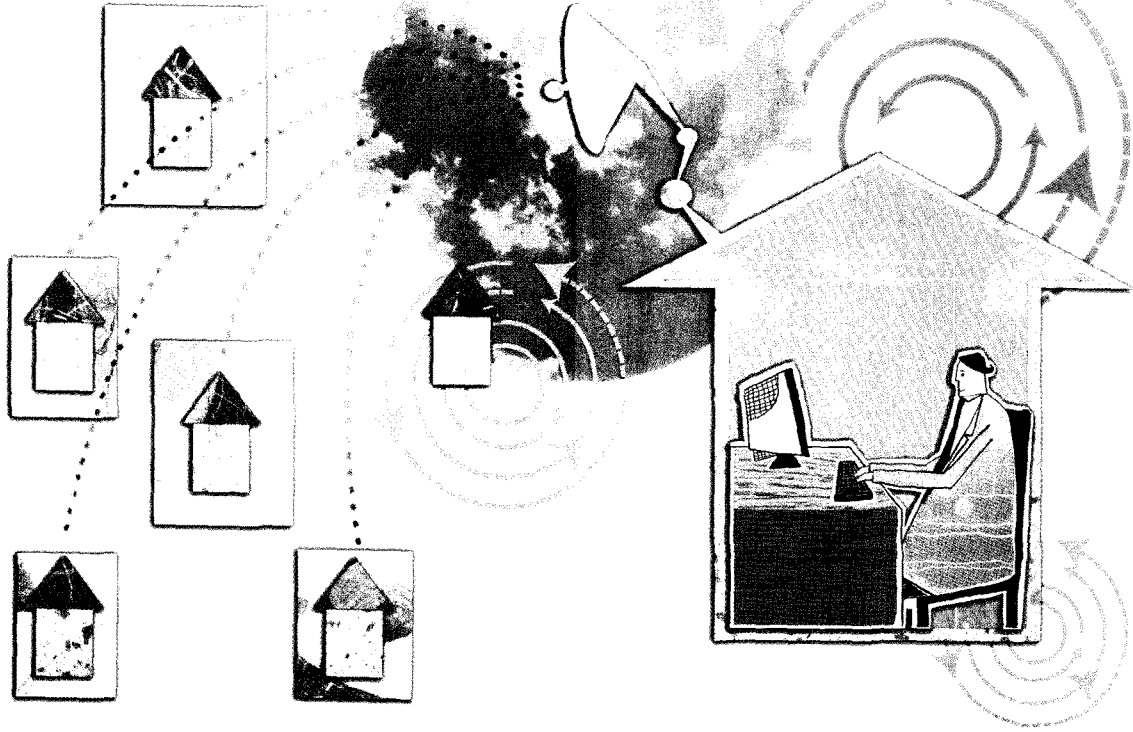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상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만 다를 뿐, 네티즌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 등 포털의 각종 게시판에 올라오는 일반 게시물·사진 및 뉴스에 붙는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중재위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결해야

〈예 - Naver 카테고리별 처리기관 이원화〉



하는데, 피해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포털의 오보와 명예훼손 댓글에 대해 한 기관에서 간편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 개인 의견으로는 피해자와 포털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중재위 또는 방통심의위 분쟁조정부의 조정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포털업체 간에 뉴스, 댓글, 블로그, 카페 게시물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중재위에는 뉴스를 근거로, 방통심의위에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근거로 신청을 해야 하며 포털이 조정합의 시 패키지딜에 응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끝으로 해당 조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분쟁을 일괄 타결시킬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포털의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의무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

포털의 뉴스서비스 및 악성 게시글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올해 4월 대법원이 큰 의미를 지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포털에 게재된 뉴스와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모 씨가 포털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우선 포털이 보관·선별·게재하는 뉴스서비스는 원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블로그·카페 글 및 뉴스 댓글 중 명백한 불법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포털이 기술적으로 관리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포털은 자체 삭제의무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했다.

필자는 이 판결이 앞서 언급한 번거로운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함과 동시에 그동안 인터넷의 악성 유언비어에 시달려온 기업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판결 이전에는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 삭제의무에 대해 분명한 범리가 없어서 악성 글이 올라와도 주로 게시자²⁾를 상대로 개별적인 대응을 한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악성 게시글이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포털을 통해 반복·계속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게시자가 아닌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삭제 또는 배상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필자 소견으로는 피해자가 일단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악성 글 게시사실에 대해 포털에 먼저 통보한 경우에는, 포털은 향후 소송을 막기 위해 유사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게시판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회사처럼 필자가 상담했던 기업들은 '발암물질', '유해물질' 과 같은 유해 게시글들이 포털 등 인터넷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많이 문의해 왔었는데, 포털을 상대로 직접 대응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판례라서 최근에 이를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³⁾

1)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지만 하면 언론사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언론사는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의 책임을 지지만, 상당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2) 게시자들이 미성년자 등 법적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적대적인 경우 직접 할의가 어려우며 또한 기업입장에서 소비자인 악성 글 게시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3) 이 글은 중재위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법원 재판부 및 중재위 중재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